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영애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,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,

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 5건으로 한정하여 포상금 예산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- 1 -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2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제1조제1항제5호에”를 “제11조제1항제5호에”로 한다.

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5건을 넘을 수 없다.

제38조제2항 중 “가해제”를 “임시해제”로 한다.

별표 2 팀원 및 전문강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“전공한 후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”을 “전공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란 제2호 중 “취득한 후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”을 “취득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별표 4 제1호가목 후단 중 “계산한다”를 “계산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유형의

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단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아동·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,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·제2항·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부작명령의 <u>가해제</u> ”는 “보호관찰의 종료”로 본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일시해제</u> -----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)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·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4호, 제11조제5호,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·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	제14조(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1조제1항제5호에</u> <u>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9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9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5건을 넘을 수 없다.</u>
제38조(보호관찰의 종료) ① (생략)	제38조(보호관찰의 종료) ① (현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아동청소년성보호과	
연락처	02-2100-6405